

## 경운대학교 교원연구년제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교원이 국내·외에서 연구활동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(이하 “연구년 교원”이라 한다)의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간)** ① 연구년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고, 그 기산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한다.

② 제3조 1항의 6년의 자격으로 6개월의 연구년을 승인받은 연구년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3조(자격)** ① 연구년을 부여하는 자격은 경운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6년 이상 근속한(연구년 기산일 기준) 전임교원으로 연구와 교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교원이라야 한다.

1. 임용된 후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학술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할 수 있는 국내·외 단체로부터 해외파견 연구지원을 받거나 산학협력을 위해 산업체 파견의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년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2. 대학의 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해 전공전환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전항 1호를 제외하고 연구년 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연구년 수행 후 재부여 자격은 전항의 기준과 같다. 다만, 연구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6개월의 연구년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.

③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년수가 4년 미만인 교원에게는 6개월의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제7조 제2항과 제5항은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다만, 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결과물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국비 파견교원과 교류교원 또는 파견근무교원(전문위원 등)은 이 규정에 의한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 다만, 연구위원회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3년이 경과하면 국비파견교원, 교류교원 또는 파견근무교원(전문위원 등)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4조(제한)**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전체교원의 7분의 1이내로 하고 소속 학부(과) 교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당해년도 연구년 교원의 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연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② 연구년 교원의 수에는 휴직교원, 국비 파견교원, 교류교원, 파견근무교원(전문위원 등), 장기해외여행(6개월 이상) 중인 교원 및 기타 총장이 승인한 국내·외 재단 또는 연구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출장 교원의 수를 포함한다.

- ③ 교무위원, 부속기관장 등의 보직교원에게는 보직 재임기간 중에는 연구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- ④ 경운대학교의 학사운영과 교내·외 연구 활동수행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⑤ 징계처분(견책 이상)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구년 교원이 될 수 없다.
- ⑥ 연구년 교원은 제7조 제5항의 결과물로서는 학술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.
- ⑦ 제7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결과보고서 및 실적물 제출 시까지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하며, 연구실적물 제출 시부터 다음 연구년 신청자격 기간을 산정한다.

**제5조(신분)**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경운대학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.

- 제6조(처우)**
- ①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년 기간 중 학사지도비, 급량비 및 교통비를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
  - ②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교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의무)**

- ① 연구년 교원은 약정된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최소한 연구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. 다만, 징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년 중의 보수전액에 대해 의무 복무기간의 잔여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이 이를 감해줄 수 있다.
- ④ 의원면직인 경우에는 임용기간과 관계없이 전항을 적용한다.
- ⑤ 연구목적의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(별지 제2호 서식)와 연구결과물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이 결과물은 연구년 종료후 2년이내에 국내저명학술지 이상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예·체능계의 작품전시·발표는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3회 이상 및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결과물이 국제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기업파견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학 결과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교원에게는 제5항과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⑧ 연구년 교원은 본교의 학과(부) 및 대학원 강의 등 제반 학사업무를 할 수 없다. 다만, 석·박사 과정학생의 논문지도 및 심사는 담당할 수 있으며, 산학협력 활동은 가능하다.

**제8조(신청)** 연구년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연구년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에 연구 계획서와 서약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연구 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교원은 연구계획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**제9조(선정)** ① 연구년 신청자에 대하여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② 총장은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학부(과)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연구계획변경)** 연구년과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년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연구활동)**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의 연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타 대학에 출강 또는 타 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없다.

**제12조(휴직등과의 관계)** ① 연구년 자격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휴직기간, 징계처분기간, 직위해 제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

② 휴직중인 교원은 제3조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

**제13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 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지 제1호 서식】

## 연 구 년 신 청 서

신 청 자	대학(학부)					학과	
	직급		성명		생년월일		
연구과제명							
임용일자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근무년수 (연구년 기산일 현재)	년      월		
연구년 신청기간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~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
연구년수행 기관(장소)				자격	교류교수, 교환교수, (기타 : )		
학 과 교 수 동 의	학과 (부)장						
교원 연구년제 규정 제8조에 의거 연구년을 신청합니다.							
붙임 1. 연구계획서 1부. 2. 서약서 1부. 끝.							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			
신 청 인 : (인)							
경운대학교 총장 귀하							

【별지 제1호의 2 서식】

## 연 구 계 획 서

1. 연구목적 및 필요성
2. 연구내용 및 방법
3. 국내외 연구동향(연구배경)
4.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5. 연구추진일정
6. 참고문헌

## 【별지 제1호의 3서식】

## 서 약 서

연구과제명 :

본인은 학년도 교원연구년 신청자로서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될 경우  
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상기의 과제를 성실히  
게 연구하겠음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 대학(학부) 학과

직위

성명 (인)

경운대학교 총장 귀하

## 【별지 제2호 서식】

## 연구년 연구결과(중간)보고서

소 속	대학(학부)			학과
직 급			성 명	
연구과제명	국문			
	영문			
연구 기간	년 월 일	~	년 월 일	
연 구 년 수행기관 (장소)			자격	교류교수, 교환교수, (기타 : )
게재(예정) 학술지명			게재(예정)일	.
<p>연구년규정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위의 연구기간중 연구한 연구결과물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</p> <p>붙임 연구결과물(추후 게재 발표 출판된 별쇄본, 발표확인물, 저서 제출) 1부. 끝.</p>				
년 월 일				
제 출 자 : (인)				
경운대학교 총장 귀하				

### 【별지 제3호 서식】

## 연구년 연구계획변경신청서

\* 당초 세부연구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붙임의 세부연구계획변경서 제출

【별지 제3호의 2 서식】

## 세 부 연 구 계 획 변 경 서

1. 연구목적 및 필요성
2. 연구내용 및 방법
3. 국내외 연구 활동(연구배경)
4.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(기대효과 및 활용방안)
5. 참고문헌

경운대학교 총장 귀하

### 【별지 제4호 서식】

## 업무착수 보고서

경운대학교 연구년교수로서 승인된 파견기관에 아래와 같이 도착하고 산학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
파견기관 근무시작일	2012년 9월 1일		
파견기관 연락처	주 소		
	Tel.		FAX.
	E-mail		
근무 부서명			
파견기관 담당자	성 명		직 책
	Tel.		부 서
대학 및 파견기관에 대한 요청사항 (해당사항이 없 을 시 공란)			

일  
월  
년

신고자 성명 : (인)

\* 유의사항 : 업무 시작 후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.

경운대학교 총장 귀하

#### 【별지 제4호의 2서식】

## 교수 파견 요청서 <기업체용>